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 지원 안내(공공보건기관용)

<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, '20. 5. 14.(목) >

## □ 사업개요

- (관련근거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,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
- (지원대상)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(8판)에 따라 확진환자, 의사환자\* 및 조사대상 유증상으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

\* 사례정의에 부합되는 자 및 집단유행과 연관되어 별도 공문을 통해 검사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에 대해서는 위탁 검사비를 수탁검사기관에 지원하며,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검역소 등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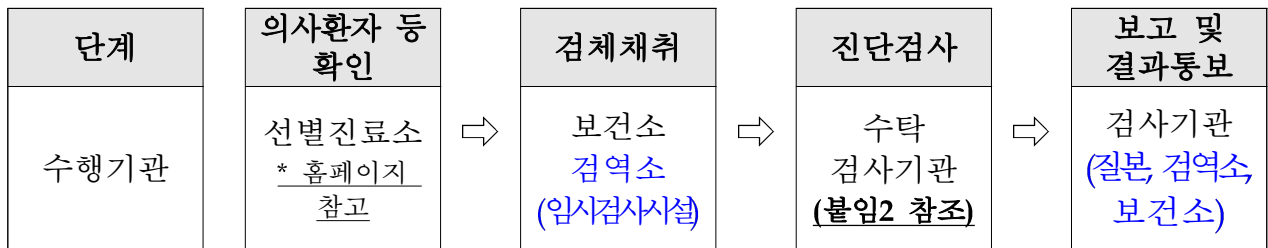
- (지원범위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 검사 위탁 지원
  - 보건소 및 검역소(임시검사시설포함): 진단 검사에 필요한 수탁검사기관 지원
  - \* 코로나19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예산은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집행
- (사업방식) 중앙은 수탁검사 기관을 일괄 선정·통보하고, 계약 및 사후정산 추진
  - (지자체) 사업 수행 편의에 따라 통보된 수탁검사기관에 검체 의뢰 실시

## □ 진단 검사 위탁 지원 대상

- (의사환자)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- (조사 대상 유증상자)
 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 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 -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
-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- 주요 임상증상 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-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(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)
  -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  -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  -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
□ 진단검사 절차 : 의사환자 등 확인 → 검체채취 → 진단검사 → 결과통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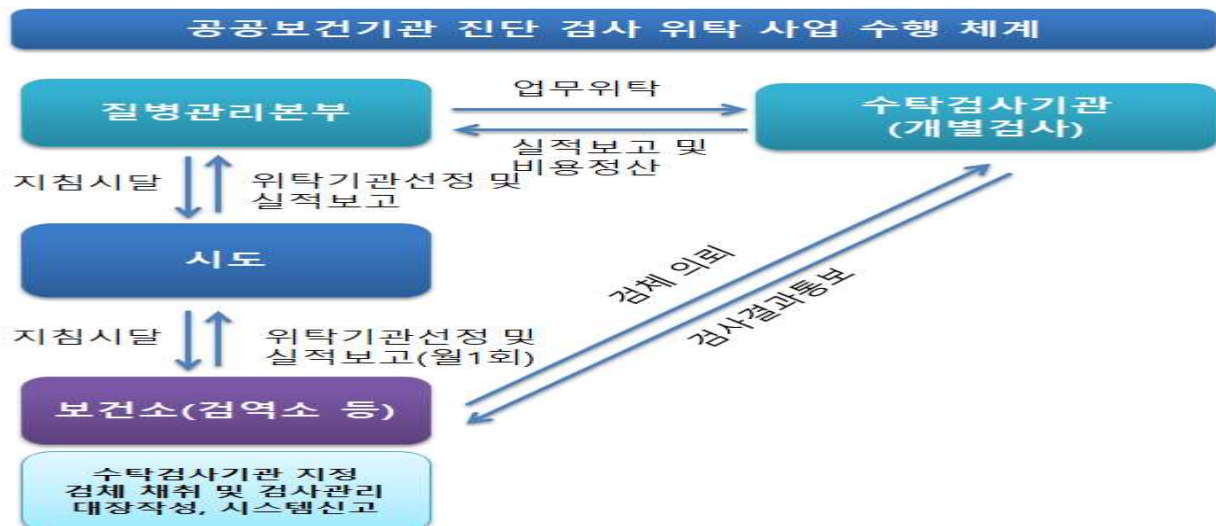
□ 진단 검사 지원절차

<진단 검사비 지원 절차>

- ①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탁 검사 기관 리스트 송부 → ② 보건소(검역소 등)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수탁검사기관 선정 → ③ 보건소 의사환자 등 등록(검역소 등은 별도 신고절차 없음) → ④ 진단검사 실시(등록대장 기록) → ⑤ 질병관리본부 보고 → ⑥ 계약 금액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업체와 일괄 실비 정산

※ 검사 가능 수탁검사기관 현황(붙임 2 참조)

□ 사업 수행 절차



### ① 수탁검사기관 지정 및 보고

- 기 통지된 수탁검사기관 중 보건소 및 검역소 등 자체 판단에 따라 지정  
\* 검체 수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중복(우선순위)하여 지정
- 지정 결과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

### ② 검사 의뢰 기관 결정 및 의뢰

- (검사수탁기관) 원칙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 및 검역소 등을 통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기 지정한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(검역소 등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음)

\*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로 신고되지 않고, 지자체 필요에 따라 검체 의뢰한 경우 진단 검사 비용은 보건소에서 자체 부담

- (보건환경연구원)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의 검체 등 역학조사와 관련된 검사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(긴급)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

### ③ 검체 시험의뢰서 작성 및 검사의뢰 대장 작성

- (검체 시험의뢰서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(8판) 서식 16참고
- (검사의뢰대장) 붙임 참조(보건소용, 검역소용) \*의명은 별도 시트에 작성

### ④ 검사 결과 보고

- (음성결과) 검사결과는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보건소 제출  
→ 관할 보건소에서 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」에 검사결과 입력 후 종료(검역소 제외)
- (양성결과) 결과 확인 즉시 우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(043-719-7979, 7790) 및 해당 보건소 및 검역소 등으로 유선 보고, 검사결과보고서는 팩스 또는 e-mail 전송  
\* 팩스 : 043-719-9459, e-mail : kcdceoc@korea.kr

### ⑤ 수탁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후 일괄 정산 처리

- 검사 의뢰 실적에 대해 월 1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
-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된 단가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 예정

□ 지원 금액 : 수탁 검사 기관과 별도 계약에 따라 일괄 지급 예정

**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가능 수탁검사기관**

[수탁검사기관 : 14개소]

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
1	(의)삼광의료재단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41길57	02-3497-5100
2	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	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	1566-6500
3	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	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	02-910-2100
4	한국필의료재단	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	02-517-1728
5	씨젠부산의원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	1566-6500
6	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 (송도동 134)	1600-0021
7	(재)서울의과학연구소(SCL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 B 흥덕빌딩 A동	1800-0119
8	녹십자의료재단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	1566-0131
9	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	031-628-0700
10	선함의원(에스큐랩, SQLab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몽매중앙로 52 에스큐랩빌딩	031-283-9270
11	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	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-8	1899-1510
12	티씨엠랩의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7 초신빌딩 2층	031-698-2728
13	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	043-292-1107
14	결핵연구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65	043-249-4950